제172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3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1 ~ 4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 ~ 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3 제출연월일 2011. 01. 1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기능 등을 그 통합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세부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위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설치 목적, 기능 등을 통합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함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나.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6조제3항).
 - 3주일 전까지 ⇒ 7일 전까지

다. 그 밖에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
-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1,120천원)
-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2. 7. ~ 12.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재정계획 수립 시 및 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2011		1
번호	2011	~	4

제출일자	2011. 01. 1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써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절차 중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시간제근무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나. 현행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로 명시함 (안 제4조제3항, 별표 신설).
- 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 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의무규정 으로 변경함(안 제12조의2).
- 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 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의 지정과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25조의3, 제31조, 제74조, 제7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제4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2. 13. ~ 2011. 01. 0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기 등록 1건(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각각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용하는 자는"을 "임용하는 사람은"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비서관 및 비서
 -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의2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 권자가 정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제2조제4항에 따라 <u>지방별정직 공무원</u>	지방별정직공무원
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제2호의 <u>지방별정직 공무원</u> (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용권자) ① (생 략)	제3조(임용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2
<u>규칙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u> 규칙으로</u>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u>각 호에</u>	제4조(임용자격) ① <u>각 호의</u>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2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u>임용하는</u>	<u>임용하는</u>
<u>자는</u>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u>자격이 있는</u>	<u>사람은</u> <u>자격이 있는</u>
<u>자를</u>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사람을
비서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은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
정할 수 있다.	격기준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	
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신 설></u>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
	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u>1. 비서관 및 비서</u>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
	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
	<u>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	
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	
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반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 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 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 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 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5 제출연월일 2011. 01. 1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변경과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 제81조에 따른
- 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비함(71필지 64,098m²) (안 별표 1).
 - 서변리 → 학리 : 61필지 50,357 m²
 - 서변리 → 양평리 : 7필지 5.327 m²
 - 학 리 → 서변리 : 2필지 7,879 m²
 - 양평리 → 서변리 : 1필지 535 m²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1. 12. ~ 12. 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리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거창군	· 리명칭 및	구역(제2조	스 관련)	[별표	1〕 <u>거창</u> 군	'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ī	4 역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상림리부터 장팔리까지		(생략)			상림리부터 장팔리까지	1	현행과 같음)
거창읍	서변리	종래 서변	리 일원		거창읍	서변리	1147 - 5 1147 - 6 1147 - 6 1147 - 1147 - 1147 - 1147 - 464 - 6, 481 - 1 482 - 2, 482 - 7, 2, 483 지역 및 4, 1047	변리 일원 중 5 ~ 1147 - 60, 62, 1147 - 63, 69 ~ 1147 - 82, 84 ~ 1147 - 96, 99 ~ 1147 - 102, 104, 1147 - 114, 116 ~1147 - 122, ~464 -3, 464 - 5, , 465 - 1, 480 - 1, ~481 - 4, 482 - 1, 482 - 4, 482 - 6, 483, 483 - 1, 483 - - 4번지를 제외한 본종래 학리 1047- - 31번지와 종래 1239 - 69번지
	동변리		(생략)			동변리		현행과 같음)
	학리	종래 학리	일원			학리	1047 - 3 및 종래 1147 - 6 1147 - 6 1147 - 6 1147 - 6 1147 - 1 1147 - 1 1147 - 1 464 - 5 480 - 1 4, 482 - 4, 482 -	리 일원 중 1047- 4, 1번지를 제외한 지역 서변리 일원 중 5 ~ 1147 - 60, 62, 1147 - 63, 69 ~ 1147 - 78, 62, 1147 - 84 ~ 64, 1147 - 99, 102, 1147 - 104, 14, 1147 - 116 ~ 22, 464 - 1~ 464 - 3, 464 - 6, 465 - 1, 481 - 1 ~ 481 - - 1, 482 - 2, 482 - 6, 482 - 7, 483, 483 -2, 483- 4번지

		현 행	개 정 안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읍면명	리명칭	구 역		
거창읍	양평리	종래 양평리 일원	거창읍	양평리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 리 1147 -79 ~ 1147 - 81, 1147 - 95, 1147 - 96, 1147 - 100, 1147 - 101번지		
	가지리	(생략)		가지리	(현행과 같음)		
주상면	도평리에서 남산리까지	(생략)	주상면	도평리에서 남산리까지	(현행과 같음)		
웅양면	동호리에서 한기리까지	(생략)	웅양면	동호리에서 한기리까지	(현행과 같음)		
고제면	농산리에서 궁항리까지	(생략)	고제면	농산리에서 궁항리까지	(현행과 같음)		
북상면	갈계리에서 창선리까지	(생략)	북상면	갈계리에서 창선리까지	(현행과 같음)		
위천면	장기리에서 모동리까지	(생략)	위천면	장기리에서 모동리까지	(현행과 같음)		
마리면	영승리에서 하고리까지	(생략)	마리면	영승리에서 하고리까지	(현행과 같음)		
남상면	춘전리에서 임불리까지	(생략)	남상면	춘전리에서 임불리까지	(현행과 같음)		
남하면	둔마리에서 지산리까지	(생략)	남하면	둔마리에서 지산리까지	(현행과 같음)		
신원면	수원리에서 와룡리까지	(생략)	신원면	수원리에서 와룡리까지	(현행과 같음)		
가조면	석강리에서 도리까지	(생략)	가조면	석강리에서 도리까지	(현행과 같음)		
가북면	우혜리에서 용산리까지	(생략)	가북면	우혜리에서 용산리까지	(현행과 같음)		
가북면		(생략)	가북면		(현행과 같음)		

[별표 1] <u>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u>제2조 관련)

습.1	면명	리	명	칭	구 역
		상	림	리	종래 상동 일원, 종래 송정리 일원 중 225-2, 1059-2~1059-35번지 및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7-1번지
		중	앙	리	종래 하동 일원
		대	동	리	종래 동동 일원
	거 창 읍	대	평	리	종래 중동 일원 중 대평리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김천리 일원 중 46, 47-2번지
거 :		김	천	리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 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산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1004~1047, 1085~1087, 225-2, 1059-2~1059-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정	장	리	종래 정장리 일원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6~1638, 1642-1~1642-7, 1647-2번지
			팔	리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 1635번지

) E	음·면 명	년 5	리	명	칭	구 역
			,	년	리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82, 1147-84~1147-96, 1147-99~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학리 1047-4, 1047-31번지와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
			0	<u></u>	<u>Ч</u> —	
거	창	<u> </u>	학	리	종래 학리 일원 중 1047-4, 1047-3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78, 1147-82, 1147-84~1147-94, 1147-99, 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	
			양	평	리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1147-79~1147-81, 1147-95, 1147-96, 1147-100, 1147-101번지
			가	지	리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3-7번지를 제외한 지역

<u> </u>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도	평	리	종래 도평	리 일원									
			연	亚	리	종래 연교	리 일원									
			내	오	리	종래 내오	리 일원									
주	상	면	완	대	리	종래 완대 종래 농산			1939~	1950번지						
			성	기	리	종래 성기	리 일원									
			거	기	리	종래 거기	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	리 일원									
			동	호	리	종래 동호	리 일원									
			죽	림	리	종래 죽림	리 일원									
			노	현	리	종래 노현	리 일원									
웅	양	면	산	포	리	종래 산포	리 일원									
			군	암	리	종래 군암	리 일원									
			신	촌	리	종래 신촌	리 일원									
			한	기	리	종래 한기	리 일원									
			농	산	리	종래 농산	리 일원	중	1939 ~	1950번지를	제외한	지역				
			개	명	리	종래 개명	리 일원									
고	제	면	봉	산	리	종래 봉산	리 일원									
							봉	계	리	종래 봉계	리 일원					
			궁	항	리	종래 궁항	리 일원									
			갈	계	리	종래 갈계	리 일원									
			소	정	리	종래 소정	리 일원									
			농	산	리	종래 농산	리 일원									
북	상	면	병	곡	리	종래 병곡	리 일원									
			산	수	리	종래 산수	리 일원									
			월	성	리	종래 월성	리 일원									
			창	선	리	종래 창선	리 일원									

<u>\$</u>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상	천	리	종래 상천리 일원
위	천	며	강	천	리	종래 강천리 일원
	겥	딘	황	산	리	종래 황산리 일원
			당	산	리	종래 당산리 일원 및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
			모	동	리	종래 모동리 일원
			영	승	리	종래 영승리 일원
			율		口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를 제외한 지역
			월	계	리	종래 월계리 일원
 	7)	гн	말	<u>항</u> 글	리	종래 말흘리 일원
마	리	면	고	학	리	종래 고학리 일원
			대	동	리	종래 대동리 일원
			하 고		1 리	종래 하고리 일원 및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109,
				고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산1004~산1047, 1085~1087번지
			춘	전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일원
			진	목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진목리 일원
			둔	동	리	종래 둔동리 일원
			오	계	리	종래 오계리 일원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1638, 1642-1~1642-7,
남	상	면	무	촌	리	16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팔리 일원 중
	П 6	Ľ				406-1~406-4번지
			송	변	리	종래 송변리 일원
			대	산	리	종래 대산리 일원
			월	평	리	종래 월평리 일원
			전	척	리	종래 전척리 일원
			임	불	리	종래 임불리 일원

Ę	G·면 명	녕	리	명	칭	구 역
			둔	마	리	종래 둔마리 일원
			양	항	리	종래 양항리 일원
남	하	면	무	릉	리	종래 무릉리 일원
			대	야	리	종래 대야리 일원
			지	산	리	종래 지산리 일원
			수	원	리	종래 수원리 일원
			양	지	리	종래 양지리 일원
			구	사	리	종래 구사리 일원
			과	정	리	종래 과정리 일원
신	원	면	덕	산	리	종래 덕산리 일원
			청	수	리	종래 청수리 일원
			중	유	리	종래 중유리 일원
			대	현	리	종래 대현리 일원
			와	룡	리	종래 와룡리 일원
가	조	巴	석	강	리	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을 제외한 지역
			7]		리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대	ネ	ᆔ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 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중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 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를 제외한 지역
	동	례	리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
	장	기	디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
가 조 면	사	병	리	종래 사병리 일원
	마	상	리	종래 마상리 일원
	수	월	리	종래 수월리 일원
		부	记	종래 일부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 및 중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우	혜	리	종래 우혜리 일원
	박	암	리	종래 박암리 일원
	몽	석	리	종래 몽석리 일원
	용	암	리	종래 용암리 일원
가 북 면	중	촌	리	종래 중촌리 일원
	해	평	리	종래 해평리 일원
	a 0	산	리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